

□ **변경사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19.7.1.시행)됨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6등급)에 따라 제공 중인 장애인 편의지원을 장애정도(2단계)에 따른 지원체계로 변경

기존 장애등급 체계	⇒	장애정도 체계(2019.7.1. 시행)
1~6급 장애등급별 편의지원 제공		'장애정도가 심한 자'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자'의 2단계 구분체계

□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19년도 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② 일시적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③ 임신부 등

□ **주요 변경사항**

- **자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의 경우는** 기존 1~3급이 '장애정도가 심한 자'로, 기존 4~6급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로 변경하여 편의지원을 하게 되므로 신청절차에 변동은 없습니다.

- **시각장애의 경우는** 기존 장애등급별 편의지원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어 부득이 진단서 증빙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구)장애등급 조회결과 안내문'**을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기간(7.15.~22.)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기관조화가 불가하니 해당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신청하여 발급

□ (구)장애등급 조회결과 안내문 서식

〈서식 6〉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제 호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1.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92. 3. 5.)
2. 주소(소재지):
3.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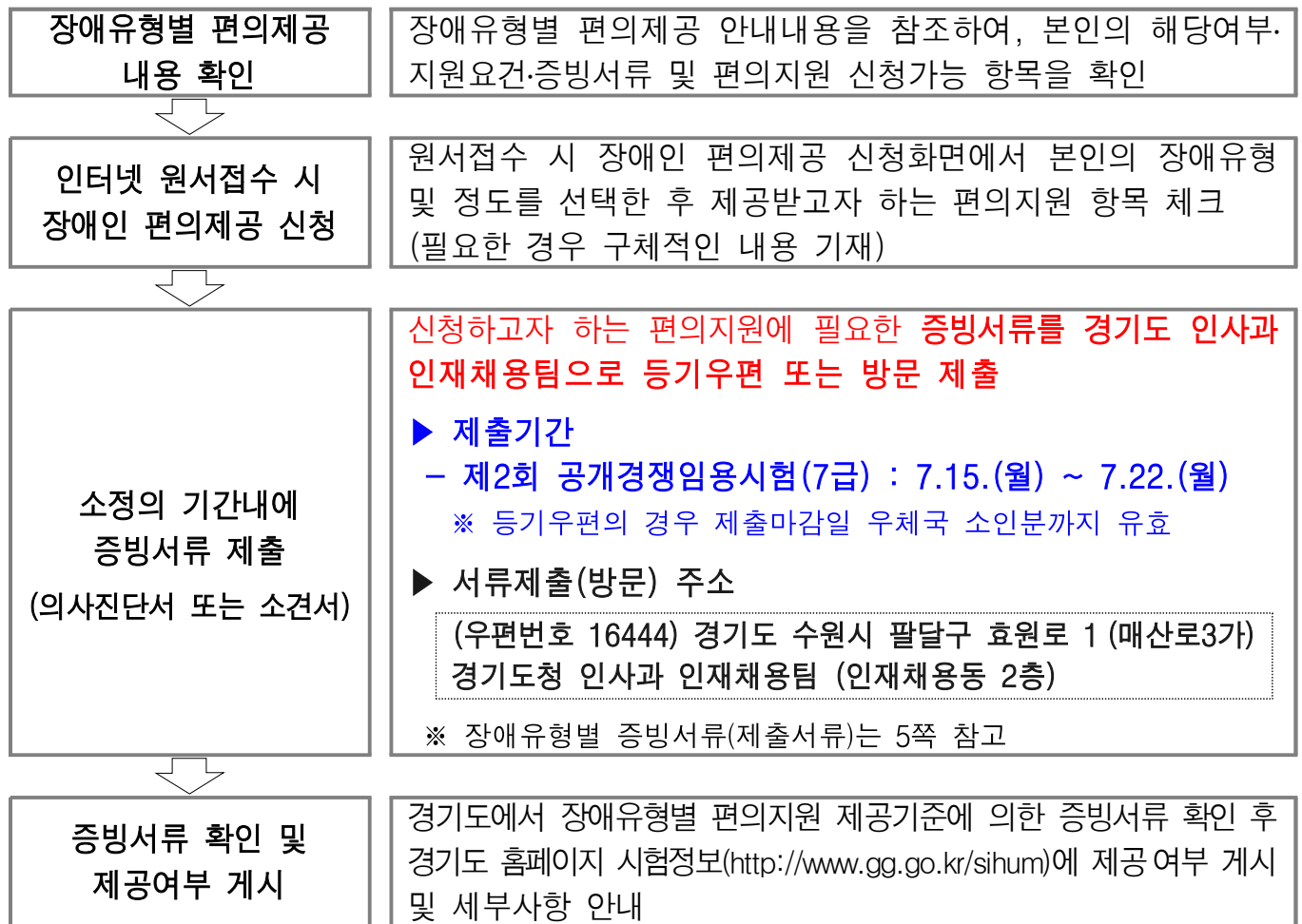
주장애 및 종합장애등급	
부장애	
등록일자	
등록번호	

2019년 7월 1일 이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등급 결정을 받은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읍면동장

발급일자 : 2019. 3. 5.

□ 편의지원 신청 절차



□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5쪽 참고)'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5쪽 참고)'를 확인 [의사진단(소견서) 제출 시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됨]
-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는 신청내용 입력란에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에서만 신청 가능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됨
 - ※ 해당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 가능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2017년과 2018년도 경기도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 지원을 받았던 응시자는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 ※ 다만,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급) 응시자는 제출했던 서류가 2017년 7월 20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증빙서류 면제가 가능함

- 시험 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편의지원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40, 40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구 장애등급)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구 1~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4~6급)	확대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하지	전체(구 1~6급)	별도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해당 없음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구 1~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해당 없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4~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 1부	
		대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확대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해당 없음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구 1~2급)	시험시간 1.7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점자문제지 제공,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구)장애등급 조회결과 안내문	
	장애정도가 심한 자 (구 3급)~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4급)	시험시간 1.7배 연장	의사진단서 1부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점자문제지 제공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장애정도가 심한 자 (구 3급)~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4급, 구 5급 1호)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구)장애등급 조회결과 안내문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구)장애등급 조회결과 안내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	시험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 1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5급 2호, 구 6급)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해당 없음		
청각장애	전체(구 2~6급)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수화통역사 배치	해당 없음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임신부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별도 시험실 배정, 높낮이 조절 책상	해당 없음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과학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학은 점자문제지, 확대·축소·한글문제지만 제공(음성지원파일 불가)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발급일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원본)

구 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급)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2019년 7월 19일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2017년 7월 20일 이후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응시자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 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구 3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4급)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4~6급)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	상기인은 임신 6주, 필기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에 의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소견서 불인정)